

2026-1학기 일반대학원 교내 장학생 선발 계획(안)

I 목적 및 근거

1. 목적

- 우수 대학원 신입생 유치 및 연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 장학금 활성화를 통한 기초 연구력 증진 도모 및 대학의 경쟁력 강화

2. 근거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등록금의 면제·감액)
- 「국립부경대학교 장학규정」, 「국립부경대학교 장학운영지침」
- 「국립부경대학교 학사운영지침」 제16조(장학금)

※ 장학생 선발 확정 이전에 장학지침 등 변경시 변경된 사항을 적용

II 대학원 교내장학 종류 및 신청자격 등

1. 교내 장학종류 및 금액(총괄표)

장 학 종 류	장학등급		장학금액 (금액단위: 원)		
	구분	장학금액(비율)	인문사회계	이학/체능계	공학/예능계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금	일반학생	등록금 50% (입학금 제외)	1,035,000	1,247,500	1,328,500
	학석사연계과정생	등록금 100% (입학금 제외)	2,070,000	2,495,000	2,657,000
학석사연계과정 입학자 장학금	입학금	178,000	178,000	178,000	178,000
정부초청입학자 장학금*	입학금	178,000	178,000	178,000	178,000
ICA 수산장학생 장학금**	등록금 100% (입학금 포함)		재학생 2,070,000	재학생 2,495,000	재학생 2,657,000
기타 특별장학***			신입생 2,248,000	신입생 2,673,000	신입생 2,835,000

* 정부초청장학생(외국인) 입학자 /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수산위원회와의 MOU에 따른 수산장학생

*** 국내외 타 대학 및 타 기관 등과 협정 및 합의 각서 등으로 인해 제공하는 장학 총칭 (해외복수학위 등)

※ 등록금 인상 시, 장학금액 변동가능 /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 가능

※ 「대학등록금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장학금의 30%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

2. 장학종류별 장학금액

가.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금

- 1) 일반학생: 등록금의 50% 지원 (입학금 제외)
- 2) 학·석사 연계과정생: 등록금의 100% 지원 (입학금은 하단 나. 장학을 통해 지원)

나. 학·석사 연계과정 입학자 장학금: 입학금 면제

다. 정부초청 입학자 장학금: 입학금 면제

라. ICA 수산장학생 장학금: 등록금 100% 지원 (입학금 포함)

마. 해외복수학위자 장학금: 등록금 100% 지원 (입학금 포함)

3. 장학금 신청자격

가.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금

- 아래의 기준을 만족하는 자로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주임의 추천을 받은 자
 - 근로소득(직장, 개인사업체 포함)이 없는 자로서 4대보험 미가입자
 - ※ 장학 수혜기간 동안 미취업 상태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함
 - 수업연한(석사/박사 2년, 석·박통합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자
 - **10주, 주 12시간 이상** 지도교수 연구 및 수업 보조를 수행할 수 있는 자
 - 직전학기 1과목 이상(선수과목, 대이과목 제외) 이수한 성적의 평점평균 3.5이상인 자 (단, 신입생은 평점평균 자격요건 해당사항 없음)
 -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생으로서 재학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을 제출한 자

* 연구실적 제출대상: 본 장학금을 3회 수혜한 3학기차 재학생

[참조]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 한국 장학재단 법정지표 달성을 위한 증빙가능한 가계곤란자 30% 선발

경제사정곤란자	증빙서류
보호자의 실직·파산 등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실직)고용보험수급자격증,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사실통지서 ■ (휴·폐업)휴·폐업사실증명원 ■ (파산)보호자 파산확정증명원(결정문) ■ (개인회생)변제수행 납입증명원, 개인회생 결정문
보호자가 중증장애인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
보호자가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등 투병으로 가계형편이 곤란한 경우	■ 진단서, 의료비영수증 등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가계 형편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가타 가계가 곤란한 경우	■ 가계곤란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공공기관 발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가구의 월평균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 (아래참조)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 중 소득 8분위(장학금 담당자 확인)

- 건강보험료 월평균 납부액(가구원 전원 포함) 기준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0%(8분위) (A)	5,128,476	8,398,584	10,718,072	12,989,476	15,113,438	17,111,904
보험료(A × 0.03545)	181,804	297,730	379,956	460,477	535,771	606,61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2025. 8. 1.)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기준 중위소득의 8분위 이하 학생 지급 / ※ 건강보험 요율 3.545% 적용(2025년)

나. 학·석사연계과정 입학자 장학금: 학·석사연계과정으로 입학한 자

- 학·석사연계과정 신입생 확정 후 등록금고지서 선감면 처리

다. 정부초청 입학자 장학금: 정부초청장학생(외국인)으로 입학한 자

- 국제교류본부의 정부초청장학생 명단을 받아 등록금고지서 선감면 처리

라. ICA 수산장학생 장학금: ICA 수산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 국제교류본부의 ICA 수산장학생 명단을 받아 등록금고지서 선감면 처리

마. 해외복수학위 선발자: 해외복수학위 협정에 의해 입학한 학생

4. 장학금 예산과목

가. 입학금: 자체수입금-교육활동수입-입학금-대학원생입학금

나. 수업료: 자체수입금-교육활동수입-수업료-대학원생수업료

Ⅲ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 일정(안)

1. 선발 일정

대상 \ 내용	장학금 신청 학생→학과사무실	장학 서류확인·추천 학과사무실→대학원	장학 서류심사·선발 대학원
내국인신입생, 외국인신입생	1. 14.(수)	1. 15.(목) 12시	1. 15.(목)
재학생 (석박통합전환 포함)	1. 12.(월)	1. 14.(수)	1. 20.(화)
학석사연계, 추가, 편입생, 재입학생	2. 9.(월)	2. 10.(화) 14시	2. 11.(수)

2. 활동 일정

가. 조교 활동계획서, 복무협약서 제출: 2026. 3월 중

나. 조교 활동기간: 2026. 3. 3.(화) ~ 6. 17.(수)

다. 조교 활동보고서, (해당시) 연구실적 이행결과 보고서 제출: 2026. 6. 24.(수)까지

Ⅳ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 신청 및 지급방법

1. 대학원 장학금 신청

가. 신청기간: 신입생 2026. 1. 14.(수)까지 / 재학생 1. 12.(월)까지

나. 신청절차: 학생(제출서류) → 학과 사무실 → 대학원 행정실

다. 신청서류

제출서류명	내국인	외국인
장학생 추천서	○	○
4대사회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가계곤란자	×

* 공문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라. 신청시 확인사항

- 1) 외국인학생 체류자격 대상
 - D2(유학), D4(일반연수), F2(장기체류비자), F4(재외동포), F5(영주권), F6(결혼이민)
- 2) 외국인 학생의 미입국 또는 연락두절, 외국인등록 지연 등으로 4대보험 가입 내역확인서 등 제증명 서류 발급 곤란 시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 첨부
- 3)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 www.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 메뉴 → 개인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조회조건(전체) → 프린트발급
- 4)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발급 방법: www.4insure.or.kr → 개인 공인인증서 /간편인증 로그인 → '증명서발급' 메뉴 → '증명서 신청/발급' 신청 → 4개 처리기관의 처리여부 '출력가능' 확인 후 증명서 출력
- 5) 미취업자 인정여부 구분
 - 인 정: 미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지역세대원, 지역세대주(사업장명칭 미표기)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에 따른 학생연구자 산재보험 가입자는 제외(2022.01.01.)
 - 미인정: 지역세대주(사업장명칭 표기), 사업장가입자, 직장가입자
- 6) 가계곤란자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 납부 확인
 -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의 건강보험료가 확인되어야 함

2. 장학금 지급방법

가. 1~2차 선발자는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하여 선감면 혹은 후감면

나. 3차 선발자(개강 후 선발)는 개인계좌로 지급 예정(2026년 6월 예정)

※ 3차 선발자는 선감면을 신청하지 못한자로 아래 사유 등으로 제한하여 선발

사유1) 외국인신입생 및 재학생 연락두절(이메일 연락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사유2) 방학기간 중 아르바이트(취업)상태 유지로 인해 4대보험 가입내역이 있는자

사유3) 연구실적제출의무자가 방학기간중(1~2월, 7~8월)에 학술대회발표, 논문게재 예정인 경우
선감면이 불가능하며, 발표/게재 완료 후 3차로 신청 시

사유4) 기타 학생의 과실이 아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V 대학원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및 자격상실

1.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제출

제출시기	제출서류	내국인	외국인	비 고
학기 초	조교 활동계획서	○	○	
	복무협약서	○	○	
매월 말	활동보고서*	○	○	매월 학과 확인
학기 초, 학기 말 (총 2회)	4대보험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	○	미취업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X	(공문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학기 말	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	○	해당자에 한함

* 2026. 3. 3.(화) ~ 6. 17.(수) 기간 내 총 10주, 주 12시간이상 활동

2.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근로사항

가. 연구조교: 교수의 연구, 연구 관련 실험/실습 등의 보조, 학과(부) 실험실 관리 등 연구 보조

나. 수업조교: 교수의 강의, 수업 관련 실험, 학생 수강 지도, 과제물 처리 등 수업 보조

※ 지도교수 1인당 **수업조교 1명이하** 배정 / 각 조교 인원은 학과(부)·전공에서 자체적으로 배정

3.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의무사항

가. 복무협약서*

- 전공 주임과 학생간의 복무협약서 체결결과를 대학원행정실로 공문제출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4116(2018.11.28.) 대학원생 조교 권리강화를 위한 교육부 권고사항

나. 활동보고서

1) **10주, 주 12시간 이상** 활동내역 월별 작성 (학사행정시스템 활용 가능)

2) 학생 개인별 수업(보강) 시간 및 개인 연구는 활동내역으로 작성 불가
예시) 논문작성, 한국어 공부, 시험공부 등 개인 연구 및 활동 미인정

3) 학생 개인일정상* 활동이 불가능한 일자 및 시간은 활동내역으로 작성 불가

* 해외여행, 예비군훈련, 병원진료 및 입원 등(외국인학생 출입국 유의)

4) 연구보조/수업보조 활동실적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학과에 제출

- 학과에서는 매월 활동보고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보관

다. 연구실적

1) 제출대상: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금 3회 수혜한 3학기차 재학생

※ 이공계 2015학년도 / 인문사회·예체능계 2017학년도 입학자부터

2) 제출시기: 재학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 1회 제출

3) 제출서류: 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표지, 목차, 내용)

4) 연구실적 인정범위

- 논문: 아래 학술지에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로서 논문을 게재한 경우

※ 논문게재예정증명서 불인정

구분	인정기준
국제전문학술지	- Science, Nature, Cell에 게재된 논문 (Nature의 범위: Nature에서 발행하는 저널 중 「Nature」지에 한함) - SCI, SSCI, AHCI, SCIE,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
국내전문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등재후보지 포함)

- 학술회의: 형식과 절차를 갖춘 아래의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경우

※ 학술대회발표 예정증명서 불인정

※ 발표자를 원칙으로 하되, 발표자 표시(별표, 밑줄 등)가 구분되지 않을 경우 제1저자도 인정

구분	인정기준	계열별 인정범위	
		이학 및 공학	인문사회 및 예체능
국제저명학술 회의발표 논문	- SCI, SSCI, AHCI, SCIE,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의 학회에서 개최하는 국제규모 학술회의 발표논문 - SCI, SSCI, AHCI, SCIE, SCOPUS에 게재되는 국제규모 학술회의 발표논문	인정	인정
국제기타학술 회의발표 논문	- 국제저명학술회의발표논문에 해당되지 않는 국외 학술단체의 학술회의 발표논문 - 국내학술단체가 외국기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회의 발표논문(국내학술단체 단독주최의 외국인 참여는 동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음) - SCI, SSCI, AHCI, SCIE,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의 국내학술단체가 국내에서 단독으로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급(등재후보 포함) 학술지의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회의 발표논문 <지부학회 포함>		
기타학술회의 발표논문	국제저명학술회의, 국제기타학술회의, 전국규모학술회의에 속하지 않는 국내·외 기타 학술회의	미인정	

4. 연구조교/수업조교 장학생 자격 상실 및 조치

가. 자격상실

- 1) 신청 자격을 만족하지 아니한 자가 장학생으로 추천·선발된 경우
 - 2) 장학생으로 선발된 후 취업이 되거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으로 인하여 임무수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3) 10주, 주 12시간 이상 활동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활동보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 4) 연구실적 제출대상 학생*이 재학 3학기 이내에 연구실적을 미제출한 경우
- * 연구실적 제출대상: 본 장학금을 3회 수혜한 3학기차 재학생

나. 조치사항

- 당해학기 장학금 취소를 하지 않으나, 다음학기부터 장학금 수혜자격 상실
- 상기 2), 3)에 한하여 다음학기 개강 후 장학을 신청하여 장학금미수혜 & 장학활동을 완료할 경우, 다다음학기 장학금 신청자격 회복

※ (2026-1학기) 취업으로 인한 장학생 자격상실 → (2026-2학기) 9월에 장학금 신청, 장학금 미수혜·미취업 상태로 장학활동 완료 → (2027-1학기) 장학금 신청자격 회복

VI 행정사항

- 대학원 장학금 신청 홍보를 위해 학과에서는 게시판에 게시 및 대상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대상자가 누락되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
- 2026학년도 학·석사연계과정 입학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장학생 추천 및 3차 선발(후감면)에 관한 사항은 2026년 3월 중 별도 공문시행 예정
- 등록금고지서 발급 등 학사일정과 연계되므로 추진일정을 반드시 준수
- 교내 장학예산 규모에 따라 장학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붙임 1. 장학생 추천서(서식) 1부.
2. 구비서류 미제출 확인서(서식) 1부.
3. 조교 활동계획서(서식) 1부.
4. 복무협약서(서식) 1부.
5. 활동보고서(서식) 1부.
6. 연구실적이행결과보고서(서식) 1부. 끝.